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주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829

발의연월일: 2020. 11. 2.

발 의 자: 박주민·강은미·김종민

이재정・안규백・강득구

서삼석 • 이수진비 • 진선미

진성준 · 김정호 · 이탄희

의원(12인)

제안이유

2016년 「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」 개정으로 범죄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배상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이 신청서 부본 상의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등 신청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을 가리고 송달할수 있게 됨. 그러나 배상액을 산정하느라 형사재판이 길어지는 문제때문에 배상명령 활용이 저조함. 이에 피해자들 다수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피해를 배상받아야 하는 상황임.

그런데 현행 「민사소송법」에는 법원이 소송서류를 송달할 때 피해자의 신원자료를 가리고 송달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어,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 가해자에게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바, 피해자들의 인적 사항 유출로 인한 추가피해 우려가 있고, 보복범죄 등을 우려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는 피해자도 있음.

이에 소송서류 송달 및 소송기록 열람·복사 시 법원이 직권 또는 신

청에 따라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는 근 거를 마련하여 피해자가 신원노출에 대한 두려움 없이 민사소송을 통 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법원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기록 등을 통해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무제한적으로 공개되는 경우 당사자나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열람·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수 있도록 함(안 제162조제5항 신설).
- 나. 소장과 준비서면 부본을 송달할 때 법원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등의 경우에는 직권 또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성명과 주소 등 원고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리고 송달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55조 및 제273조).

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2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법원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의소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소에 대한 기록으로서 당사자나 증인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열람·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.
- ⑧ 제5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.

제255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법원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소의 경우에는 직권 또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소장 부본에 기재된 원고의 성명과 주소 등 원고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리고 송달할 수 있다. 제273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준비서면 부본의 송달에 관하여는 제255조제1항 후단을 준

용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2조(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	제162조(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
서의 교부청구) ① ~ ④ (생	서의 교부청구) ① ~ ④ (현행
략)	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⑤ 법원은 범죄행위로 인하여
	발생한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
	청구의 소 등 대법원규칙이 정
	하는 소에 대한 기록으로서 당
	사자나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
	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
	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
	소송기록의 열람·복사에 앞서
	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
	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
	호조치를 할 수 있다.
<u>⑤</u> ・ <u>⑥</u> (생 략)	<u>⑥</u> ・ <u>⑦</u> (현행 제5항 및 제6항
	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⑧ 제5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
	호조치의 방법과 절차, 그 밖에
	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
	<u>정한다.</u>
제255조(소장부본의 송달) ① 법	제255조(소장부본의 송달) ①
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	
송달하여야 한다. < <u>후단 신설></u>	

② (생 략)

제273조(준비서면의 제출 등) 준 저비서면은 그것에 적힌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두고 제출하여 야 하며, 법원은 상대방에게 그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. <후 단 신설>

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소의 경우에는 직권 또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소장 부본에 기재된 원고의 성명과 주소 등 원고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리고 송달할 수 있다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273조(준비서면의 제	출 등)
	<u> • </u>
경우 준비서면 부본	의 송달에
관하여는 제255조제1	항 후단을
준용한다.	